

본인확인	상담자	등록자	책임자

고객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속행위 규제유의사항 안내

중소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구속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신용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아래의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 신규 후 1개월 이내 대출거래 ■ 대출거래 후 1개월 이내 투자상품의 신규

1.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신청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소비자(만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희망하지 않으실 경우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진행됩니다.

특정소비자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를 당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신청 고객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 우선 설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상품의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상품 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불이익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 가입 전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	

2. 투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개인)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법인)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 :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